

[파일삭제] 직원이 퇴직 전 몰래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+ 삭제행위 입증하는 직

접 증거 없음에도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정황증거 종합하여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: 서울

서부지방법원 2018. 2. 20. 선고 2017고단2232 판결



### 공소사실

피해자 회사의 디자인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과 업무상 갈등으로 퇴사할 것을 마음먹고, 2016. 9. 23. 14:45경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보관 중이던 약 1020개의 디자인 작업파일을 삭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 업무를 방해하였다.

### 법원의 판단

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(수사기록 122면 등)에 의하면 피고인이 점심시간 이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시간대인 2016. 9. 23. 14:45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인 디자인 작업파일의 삭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시간대에 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고 화장실 갈 때를 제

외하고는 달리 자리를 비운 적은 없는 점, 위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 외에 이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타인을 상정하기 힘든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본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그다지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,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.

첨부: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 2. 20. 선고 2017고단2232 판결

민형사소송, 파일삭제, 업무방해, 기술법무, 저작권, 영업비밀, 계약분쟁, 손해배상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